

2024년 신산업 ^{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 공고

신산업 중심의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장려를 위한 「2024년 신산업 플러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모집개요

- 사업명 : 2024년 포항시 신산업 플러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4. 4. 29.(월) ~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고용인원을 유지하면서 신규채용 인원이 증가한 포항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근로복지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별표1. 참조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업체 자부담 10%)
- 절차 및 일정

접수 및 선정(5월)	사업 시행(5월~10월)	지원금 지급(6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심사 및 선정 - 정량적 심사(평가표) - 고득점 순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개별수행(지원항목 선택) ※24.10.11.까지 사업완료· 업체 현장점검(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별 사업 완료시 지원금 지급 (관련비용 선집행 후 청구)· 제출증빙 적격시 지급

2

세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통 요건】 (※모두 충족)

-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포항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기업 ※붙임2. 참조
- ② 2022년 12월말 대비 2023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하면서 2023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고용 유지), 또는 동기간 고용 증가율이 20%이상인 기업
※둘 중 기업에 유리한 기준 적용, 단 외국인 근로자 미포함

〈증가율 계산 기준 및 예시〉 ※고용보험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고용인원 : 10명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고용인원 : 8명

계산식) $(10\text{명}-8\text{명})\div 8\text{명}\times 100=25(\%)$

【기업별 요건】 (※어느 하나 충족)

-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영위기업 ※업종무관
-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_ 표1.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 신산업 기업 입증자료 제출 필수(인증, 납품내역, 인·허가증 외)
- 제조업(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
- 건설업(건설업 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업력이 만2년 미만인 기업 (※평가표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한 기업)
-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
-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내용

- 근로복지 또는 경쟁력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항목 중 1개 이상 선택)
- 소요금액(공급가액)의 90% 지원,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별표1.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지원분야 및 세부지원내용

분야	지원항목	지원 내용
근로자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	근로자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자부담의무 면제 - 기업 내 상시근로자 대상 건강검진비 지원 - 단체검진 또는 근로자 개별검진 가능 (단, 개별검진시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검진만 지원가능) - 인당 50만원 이내 지원(초과비용 발생시 업체(근로자) 부담)
	근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성격의 물품, 집기류 구입 지원불가 • 작업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작업장 내·외부 개선 (내외벽 및 바닥 도색, 출입시설, 난간, 계단 등) • 위험,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및 안전시설(경보시스템, 안전보조시설물) 설치, 오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 보안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TV 및 보안시시스템 설치 등
기업 경쟁력 향상	경영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단 및 컨설팅 / 투자유치, 법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운영 전반(기술, 생산, 마케팅, 재무, 경영전략 등) 컨설팅 지원 - 자금조달(벤처캐피탈, IR 등), 각종 법률자문 지원 • 조직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기술훈련 등 직무교육 지원 - 노사관계 및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개최 등 지원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선
	기술·제품 고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재산권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출원(등록) 관납료 및 대행 수수료 지원 - 제품 및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취득 지원 •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성능 시험분석인증 수수료 등 지원 • 공정혁신,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설비·공정 진단 및 솔루션 지원 - 개발기술 시장조사,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적격심사 심사 결과에 따라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추가선정)**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 지원제외 등으로 사업비 잔액 발생 예상시 예비접수 업체 추가 선정

○ 선정통보 및 현장점검

- 선정업체 공고 또는 서면 개별 통보(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소요)
- 선정업체 현장점검 실시
 - 사업장 운영 여부 확인, 대표자 면담 등 진행
 - 현장점검 결과 사업장 미 운영시 선정 취소
 - 지원기업 세부사업 추진계획 검토 및 준수사항 등 안내

○ 선정기업 이행사항

- 기업별 제출한 사업신청서 상 추진내용 및 계획을 토대로 맞춤형사업 수행
- 다만, 수행업체(거래업체)와 계약전 진흥원과 사전 협의 요청
 - 수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해당기업의 적격여부, 동사업 지원범위 내 용역수행 여부 등 검토
 - ※ 지원기준 미준수 또는 사업수행 결과의 부적격으로 지원금 수령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예방
- 지원업체 선정 통보시 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금 지급

○ 추진방법 및 사업수행 기간

- 선정된 기업이 신청한 지원항목(별표1)에 따라 적격 거래처 선정 및 계약
- 사업수행 기간 : 선정통보 ~ 24. 10. 11.
 - ※기한까지 사업완료 불가시 사유서 제출받아 승인
- 사업 변경 : 변경 요청시 검토 후 변경 승인(최초 선정금액 범위내)
- 지원항목에 따라(근로환경 개선 등) 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 지원금 지급

- 업체가 상대방 거래처에 거래대금 총액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 다 건인 경우 전체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요청시 일시 지급
- 청구시 필요서류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24년 10월 11일 까지 추진사업 완료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기업 계좌로 지급(1개월정도 소요)

○ 지원중지 및 환수

-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업 결과물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해당 지원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받는 경우
- 사업 지원기간 중 사업장 미운영, 휴·폐업 하는 경우 등

4

신청 및 문의

○ 모집기간 : 2024. 4. 29.(월) ~ 예산소진시 까지

○ 제출서류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약약서 각 1부【서식2】
-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 ④ 업종별 입증자료(공장등록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신산업기업 입증자료)
- ⑤ 2023년 결산재무제표(전기분 포함) 1부
-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일자 : 2022년 12월 31일 및 2023년 12월 31일 각1부**)
- ⑦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⑨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요청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우편 접수한 경우 반드시 우편 수령여부 확인 요청
- 접수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신청문의 : 054-612-2968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담당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붙임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붙임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 가목 별표1(중소기업 범위). 끝.

붙임1. 중소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㉑	이차전지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㉔	우주
㉕	차세대 원전
㉖	양자
㉗	사이버 보안

붙임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 가목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